

수원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가단552253 판결 [시효중단을 위한 구상금 청구확인]

전 문

원 고 A단체

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10. 19.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9. 12. 21. 선고 2009차9755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유선우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관리기간이고 피고는 동 법에서 정의한 농림수산업자입니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가 대출을 받을시 위 은행에 대한 채무이행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때 신용보증서로 보증을 합니다.
3.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1,508,169원 및 그중 금54,182,048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15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까지 연15%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판결을 2009.12.21.에 수원지방법원 2009 차 9755 구상금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4. 2011.05.19.자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D 부동산 강제경매로 인하여 배당금 금 4,232,757원을 받고 부기문을 부여 받았습니다.
5.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권 신청에 이르게 되었고 종전에는 이러한 소송상 청구를 이행소송의 형태로만 제기할 수 있었으나, 지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었습니다.
6.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행한 이권 신청은 인용되어야 하겠습니까.

끝.

